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현장검증 실시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1 |
|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8 |
| 3. 현장검증 실시의 건 | 11 |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오후 3시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예.

○곽규택 위원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어저께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낸 연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부터 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검찰정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감사위원들 간에 어떤 특정한 감사 사안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그 감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사위원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또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확인한 것을 또 언론에 공표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감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할 사안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감사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또 평가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향후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나 각종 국회에서의 조사 이럴 때 꼭 이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이 단골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감사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 나온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승원 위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사찰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거나 감사를 청원하면 감사원이 나서서 포렌식이라든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고 그 자료 전체를 검찰에다가 보내서 수사를 하게끔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지난 21대 때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수 6건, 수사 요청한 건수 45건, 수사 참고에 쓰라고 던져 준 게 20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 포렌식하고 또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사실 던져 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월성원전 사건 모든 자료들이 다 검찰에 가서 정말 쌍끌이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모욕적인 감사도 받으면서 수년간의 재판에 시달린 그런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관사와…… 용산과 한남동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들었습니다.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이것 큰일 나겠다라는 제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 100% 부실 공사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원을 했고 지금 감사원도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다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불법은 아니랍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에 법 위반은 아니라서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했다, 그것 왜 그렇게 봤는지 감사위원들 회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인 제 눈에 봐도 국가계약법 위반 또 하청법 위반, 전기사업법 위반 이런 법 위반들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이것은 용산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아니, 그런 자료도 못 줍니까? 감사원이 예전 대통령실 청탁에 의해서 한 감사는 얼마나 지독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영장 없이 포렌식하고 공무원들 개인 의료자료까지 다 내라고 몇만 명한테 그 자료를 뽑아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회의록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도 사실은 정갈하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진실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청이고, 사실은 저희가 녹취록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녹취록을 누가 안 받는다고 그래요? 관련 자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박은정 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장경태 위원 녹취록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친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이 관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놨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당당하면 공개하세요. 이 감사 제대로 했다고, 적법했다고, 자기 의견이 이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내놔서…… 이것이 나중에 토론에, 회의에 방해가 될 것이다. 왜 방해됩니까? 당당하게……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감사원을 통해서 벌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성원전 감사, 그 감사자료 전부 다 검찰에 가져가 가지고 대대적인 수사 이루어졌는데 그 공무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관저 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제대로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런데 중대한 사항이 아니랍니다. 김건희 씨 개인주택 인테리어 건축했습니까? 개인 가정집을 증축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관저를 증축했는데 무자격 업체들이 우르르 가 가지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하고 옛날부터 뭔가 인연이 있는 그리고 후원을 계속했던 그러한 업체들이 지금 저기 다 달라붙어 가지고 건축했는데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원장님이.

감사위원들은 어떤 의견이셨을까요? 감사해야 된다고 말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감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대검찰청에 특활비 검증하려 국회의원들 오셨습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검찰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가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보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지, 누가 무책임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철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감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직무감찰을 하고요.

여기서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어떤 경위로 체결했는지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냐 또는 직무유기냐, 부패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이 불법이냐 또는 부패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비서실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그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 관저 이것은 당연히 보안상 중요한 기관이지요. 그리고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게 지금 내부적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 여섯 명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하다 또는 어떤 부분은 더 필요하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정파적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격 없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절차 위반, 법령 규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적이 됐고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언론에 공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 의미 외에는 보이

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감사원의 회의록 공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원 기관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감사위원들도 다 임명에 대해서 헌법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 내용은 독립성을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또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태도가 바뀌는데 저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어도 이 부분을 좀 존중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국가기관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회의록은 이미 토의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은 결국은 위원이 개개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그것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관례가 되면 앞으로 감사위원들 회의할 때 자기 소신껏 발언 못 합니다. 소신껏 토의 못 합니다.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반대적인 정파에 흘러들어 가서 어떻게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 이런 불안한 생각, 두려움으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제대로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상 그리고 헌법상 위치로 봐서 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법치국가지요. 그래서 ‘법 위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예로 드셨는데요, 감사원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영업상 비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서 유죄가 됐는데 왜 감사원은 국회에 내지 않느냐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관은. 여기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곳이고.

또 관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여야 정치인들이 분명히 이런저런 이유로 관례적으로 관례를 만들었고 운영을 했고 저는 그것은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현희 위원 마지막 토론하세요.

○전현희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의, 전원위원회의 성격을 약간 오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의 전원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개재판을 해도 되는 그런, 실제로 법원은 공개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공개하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밀실에서, 예를 들면 합의부 판사들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합의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들이 공개된 재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전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내놓고 그리고 사실상 합의부에 해당되는 판사 격인 전원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검사 격인 사무처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구두로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전원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이 공개재판주의로 국민들에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내용을 전체 공개를 하듯이 감사위원회의 전원위원회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정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공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재판정에서 실제로 판사와 검사들이 어떤 견해를 주고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의 알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밀실에서 어떤 비밀을 요하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참여한 감사위원들 중에 구두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하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감사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감사위원들의 관련 의견서를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로써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장경태 위원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제가 토론을……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토론하기 전에 토의하는 거니까,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토론을 하니까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종결하자는 이성윤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동의를 하셨지만 그래도 토론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일정을 민주당에서 넣은 거지요. 저희가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 주셔야지요.

○ **김승원 위원** 반대를 하셔서……

○ **유상범 위원** 아니, 반대의견을 들어 주는 거지요. 반대의견을 잘 들어 주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 **위원장 정청래**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송석준 위원** 또 밀어붙여요? 맨날 밀어붙이는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법 61조에 따라서, 국회법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의 운영규칙 16조에 비공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증감법 제2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자료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원 자료는 비공개하자라는 것은 언어 모순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든 감사원이든 위원회 의결로써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주의의 적은 반민주입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사에 성역이 없습니다. 감사에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것이 무어라고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감사원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주의 주장은 정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이 정별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법한, 불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주의 주장을 가지고 정별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를 하라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를 띄엄띄엄하고 진실에 대해서 덮을 건 덮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국정감사가 법으로 보장된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권한만큼 저는 법대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국회법 절차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4시26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변경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24일 오후에 실시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증인 29인과 감사위원 6인을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의가 없어도 될 텐데……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위원** 송 위원 하세요. 하시면 돼요, 송석준 위원.

○**송석준 위원**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눈치를 보고 그래. 얼마나 그냥 탄압을 했으면 눈치를 보나.

○**서영교 위원** 눈 한 번 마주쳐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래요.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또 나중에 딴소리할 것 같아요, 꼭.

○**위원장 정청래** 자, 토론부터 하세요.

○**송석준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감시하고 비리를 밝혀내고 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예산의 엄정 집행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을 국정감사 할 때는 감사원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감사원에 대한 예우는 또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함께 계시는 감사원장님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여야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쩌면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겁박을 하세요.

지금 법사위원회장님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국회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300명 중의 한 분이고 국회직 중의 한 직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법사위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한 내용을 갖고서 마치 무슨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결과를 안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류 다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건. 그렇지만 드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의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의 의사적인 과정 절차는 사실은 받아 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난상 토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달라 이거예요. 아직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소모적인 국감 하지 마시고 감사원을 믿고 감사원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무리하게 현장검증을 한다고…… 또 직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토론하세요.

○장경태 위원 저는 유일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관이기도 한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국회증감법이나 국조법, 국정감사법에도 근거해서 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추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또 피감기관들의 비협조 등이 모두 다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제출하면 될 문서들을 지금 위의 정무직, 고위직들이 막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저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을 의결해서라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위원장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이제 토론 종결……

○김승원 위원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3. 현장검증 실시의 건

(14시34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일체 및 특수활동비 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행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의 입법행정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한테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헌법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켜 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이고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했던 것도 감사원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기관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럴 정치적인 힘이,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정권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이틀 한다는 거지요.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현장 및 문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위법한 것 없습니다. 절차적인 오류 있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켜 가면서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와 야가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대립될 때 서로 의견을 맞춰 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를 하지만 우리도 피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한 번씩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감사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감사원의 기관 중인이 수십 명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위원들까지 일반증인으로 불러서 추가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좀 억지스럽고 감사위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준태 위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용민 위원** 여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해 있지만 그 법률상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해서 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과 문자 주고받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

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리 국회도 존중해야 된다, 그것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으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마저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편 이 자료가 제가 예전에 2020년에 받은 자료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의 카드 사용내역, 감사 활동비·연구비 사용내역입니다. 내역서를 다 받았어요, 이렇게. 다 받아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못 준다고 그래요? 이것 다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누가 얼마큼 썼는지 다 나옵니다. 이런 자료 다 받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판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받았던 자료고 다 검증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저런 주장은 맞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인 한편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헌법상 책무를 가지고 있지요.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공개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전문성과 비공개성을 깨트리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헌법과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딱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김용민 위원한테 이것 받아 보니까요. 어느 식당에서 얼마,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것까지 다 제출했구먼요.

○박은정 위원 그게 감사의 기본이지요.

○위원장 정청래 다 제출했고요.

○조배숙 위원 우리는 회의록 얘기한 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게 위원회 회의록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유상범 위원 회의록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김용민 위원 아니, 플러스 제출 요구한 자료를 얘기하니까, 우리 검증에 이 자료가 있어요.

○이성윤 위원 회의록, 특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택시비나 제출하세요, 택시비도 안 내는데.

○서영교 위원 이런 것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청래 이런 것도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의 것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있는 곳은 썩습니다. 그런데 견제와 감시, 비판 이런 것을 하면 스스로 자체 정화도 하고 청정구역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오히려 굽은 것을 바로잡는 역할도 국정감사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하세요.

○**주진우 위원** 저는 법사위의 횡포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 정청래** 잠깐, 주진우 위원님, 지금 법사위의 횡포라고 했습니까?

○**주진우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법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횡포입니까?

○**주진우 위원** 제가 발언하고 답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왜 발언을 방해하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 발언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말하는 부분을 듣고 나서 평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방금 박준태 위원님 얘기 못 들었어요, 국회법대로 다 하고 있다고?

○**김용민 위원** 사과하셔야지.

○**송석준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위원들의 질의를 일방적으로 끊어요?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주진우 위원** 제가 왜 횡포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곽규택 위원** 아니, 법대로 해도 방법에 따라서는 횡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법이라고 하면서 거기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견……

○**김용민 위원** 사과하세요.

○**이성윤 위원** 사과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본인도 법사위원이면서 왜 법사위 스스로를 횡포 부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의하세요.

토론하세요.

○**곽규택 위원** 끝나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송석준 위원** 문제 있는 발언은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중간에……

○**김승원 위원** 사과하세요.

○**유상범 위원** 조용히 할 게 아니잖아요. 그것 본인이 도중에 권한을, 끼어들어 놓고서는……

○**김승원 위원** 법사위가 뭔 횡포를 했다 그래요.

○**곽규택 위원** 아니, 법사위원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조배숙 위원** 왜 이렇게 발언을 통제하세요? 발언의 내용까지 통제하세요?

○**송석준 위원** 횡포가 도를 지나쳐요, 도를 지나쳐.

○**서영교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박지원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무슨 옛장수 같아, 옛장수. 아무 데나 가위로 잘라요. 가위질을 아무 데나……

○유상범 위원 시간을 주고 하세요, 이미 주어진 건데.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 토론하시고 토론 종결 동의 하세요.

○주진우 위원 제가 하고 나서 답변하시면 되지요.

○송석준 위원 예의를 지키셔야지.

○위원장 정청래 토론하세요.

○주진우 위원 일단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 규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수장한테 대놓고 고발 운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박하는 모습이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 규정 백날 읽어 봤자 법사위 운영의 모습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보여지면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저는 낯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검증 외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이 지금 보장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그때 검찰에 회유당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고 모인 것인데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당했다라고 주장하던 그 시점에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중인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줘요. 진술이 번복된 이후의 변호사만 증인으로 받아 주는데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조사 방법을 불균형 있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멋쟁해병 단톡방에 있는 3명이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규현 변호사하고 나머지 두 분이, 그분들도 다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면서 또 고발 운운하면서 닦달하고 김규현 변호사는 똑같이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고 똑같이 얘기를 들어 봐서 신빙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해서…… 발언시간도 어제 비교해 보십시오. 김규현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오래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회의록은 공개한 바 없는데 무조건 지금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성원전 사건 그다음에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것들도 감사원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증을 한다면 기왕에 감사원에 가는 이상 그것들을 같이 검증 안건으로 놓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만 딱 하나 떼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검증한다고 해서 국회의 검증 권한이 무한정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이 국회에 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주당 위원님이 맨날 말씀하시던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요.

○ **김승원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래** 김승원 위원님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검증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일반증인 명단

증인(6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조은석			
김인희			
이미현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10. 24.(목) 감사원	
김영신			
유병호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